

중소벤처기업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

중소벤처기업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(청원업무의 주관부서·처리부서) ① 「청원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청원의 접수·분류 및 청원심의회 운영 등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(이하 "주관부서"라 한다)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.

제4조(심의회 구성)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

1. 규제개혁법무담당관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청원업무의 주관부서·처리부서)① 「청원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청원의 접수·분류 및 청원심의회의 운영 등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(이하 "주관부서"라 한다)는 <u>정보화담당관</u> 으로 한다.	제2조(청원업무의 주관부서·처리부서)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규제</u> <u>개혁법무담당관</u> -----.
제4조(심의회의 구성) ② (생략) 1. <u>정보화담당관</u>	제4조(심의회의 구성) ② (현행과 같음) 1. <u>규제개혁법무담당관</u>